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를 국제평화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앞으로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보하도록하면서, 종전에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보하던 인적자원개발과장을 앞으로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양성평등정책팀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관리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송무소청팀과 군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환경소음팀과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군무원채용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부문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제4조의2제12항제5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의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장병 보건 및 복지, 예비전력관리,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부문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제9조제6항 중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을 “정책기획과·국방전략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인도태평양정책과·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으로,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을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평화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군종정책과·군무원정책과·군무원채용팀·예비전력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군훈련정책과·복지정책과·국방일자리정책과·보건정책과·군인연금과·군인재해보상”을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군종정책과·군무원정책과·군무원채용팀·군인사운영팀·예비전력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군훈련정책과·복지정책과·국방일자리정책과·보건정책과·군인연금과·군인재해보상”으로, “인사기획관리과장·병영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예비군훈련정책과장”을 “병영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종정책과장·예비군훈련정책과장”으로, “인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무원정책과장·예비전력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을 “인사기획관리과장·인력정책과장·군무원정책과장·예비전력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으로, “군무원채용팀장”을 “군무원채용팀장·군인사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조정”을 “조정(장성급 장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수립·조정”을 “수립·조정(2급 이상 군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군인사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성급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장성급장교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
3. 장성급장교의 진급·보직·전역·제적 및 해외파견 명령
4.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성급장교 인사운영 및 관리
5.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6.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 현황관리
7. 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

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을 “분장하는”으로, “데이터정책담당관이 보좌”를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이 분장”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1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

항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 인사운영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⑩ (생 략) ⑪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10. (생 략)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1. ~ 4. (생 략) 5.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 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 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 설 건설 및 운영)의 <u>예산편성</u>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u> <u>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u> <u>건설 및 운영 부문 중기계획</u> <u>수립 및 예산편성</u> 4. ~ 10. (현행과 같음) ⑫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u>예산편성</u> <u>의 총괄 · 조정</u>

<신 설>

6. (생 략)

⑬ ~ ⑯ (생 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⑤ (생 략)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 · 국방전략과 · 북한정책과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정책과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협력과 · 인도태평양정책과 ·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 · 북한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 정신전력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 방위정책과장 · 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국제

5의2.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장병보건 및 복지, 예비전력관리,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부문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6. (현행과 같음)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정책기획과 · 국방전략과 · 북한정책과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정책과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인도태평양정책과 ·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

----- 국방전략과장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국제정

정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협력과장 및 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⑮ (생략)

⑯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⑰ ~ ⑳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⑤ (생략)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 인력정책과 · 병영정책과 · 인적자원개발과 · 군종정책과 · 군무원정책과 · 군무원채용팀 · 예비전력기획과 · 자원동원과 · 예비군훈련정책과 · 복지정책과 · 국방일자리정책과 · 보건정책과 · 군인연금과 · 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인사기획관리과장 · 병영정책과장 · 군종정책과장 · 예비군훈련정책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 ·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무원정책과장 · 예비전력기획과장 · 자

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평화협력과장 -----

-----.

⑦ ~ ⑮ (현행과 같음)

⑯ 국제평화협력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⑰ ~ ⑳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사기획관리과 · 인력정책과 · 병영정책과 · 인적자원개발과 · 군종정책과 · 군무원정책과 · 군무원채용팀 · 군인사운영팀 · 예비전력기획과 · 자원동원과 · 예비군훈련정책과 · 복지정책과 · 국방일자리정책과 · 보건정책과 · 군인연금과 · 군인재해보상-----

-- 병영정책과장 ·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종정책과장 · 예비군훈련정책과장 -----

----- 인사기획관리과장 · 인력정책과장 · 군무원정책과장 · 예비전력기획과장 · 자

원동원과장 · 국방일자리정책과
장 · 보건정책과장 · 군인연금과
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
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
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
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으로 보한다.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 5. (생략)

6.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
심의위원회의 운영

7. ~ 14. (생략)

⑧ ~ ⑫ (생략)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 정

원동원과장 · 국방일자리정책과
장 · 보건정책과장 · 군인연금과
장 -----

----- 군무원채용팀장 · 군
인사운영팀장 -----

-----.

⑦ -----
-----.

1. -----
----- 조정(장성급 장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4.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 5. (생략)

<신설>

⑭ ~ ⑳ (생략)

----- 수립·조정(2급 이상 군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 5. (현행과 같음)

⑭ 군인사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성급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장성급장교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

3. 장성급장교의 진급·보직·전역·제적 및 해외파견 명령

4.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성급장교 인사운영 및 관리

5.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6.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 현황 관리

7. 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

⑮ ~ ㉓ (현행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와 같음)

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장은 <u>2026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8년 2월 29일</u>----- --. ②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0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u>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u>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	국방부령 제10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분장하는</u> ----- ----- ----- ----- -----

어용합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데이터정책담당관이 보좌하고,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국방부령 제11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6
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국방부령 제111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송무소청팀은 2026
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이 분장---

-----.

국방부령 제11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8
년 3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11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8
년 3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1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1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군무원채용팀은 <u>20</u> <u>26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u> <u>28년 3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